

지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31조, 제32조에 의거 지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며 '지부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회의 지부에 적용한다.

제4조(명칭) 지부는 광역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며, 본회의 목적과 부합한 활동에 따라 본회 명칭을 사용 승인한 것으로 본회+광역시·도지부 순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제5조(설치와 사무소 위치)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장의 소속에 따라 두며 별도의 설치가 가능하다.

제6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 ① 본회의 결의사항 즉,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 ② 지부 회원의 요구, 의견 및 제반 문제점을 본회에 보고한다.
- ③ 본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본회의 활성화 및 지부 회원 권익 증진 등 본회의 조직력 강화에 힘쓴다.
- ④ 기타 지부 단위의 특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자격 및 가입) 본회의 정회원은 본인 주소지 광역시·도 지부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8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②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③ 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④ 기타 지부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3장 조직

제9조 (구성) 지부는 다음 각호의 3인을 선출해야 한다.

1. 지부장 1인
2. 감사 2인

제10조(지부장) 지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인이 된다.
-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⑤ 지부 사무국의 임명권을 갖는다.

제11조(감사) 감사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 ② 지부 사업 및 재정, 예결산 집행을 감사한다.

제12조(선출) ① 지부장과 감사의 자격은 본회 회칙을 따른다.

② 지부장과 감사는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②항에서, 단일 후보의 경우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을 득한 자로, 복수 후보의 경우는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3조(임기) ① 지부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 총회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에 의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불신임) ① 지부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이사회 2/3의 출석과 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운영) 지부장은 지부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구성해야 한다.

1. 사무국장

- 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지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팀 간 조정과 회원 간 협력, 조정을 담당한다.
- 다. 예산지출, 결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라. 지부의 일반 서무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국장

- 가. 예산지출, 결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지부의 일반 서무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들과의 연대 업무를 수행한다.
- 라.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육국장

- 가. 회원 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성장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나. 지부(장) 활동과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원국장

- 가. 회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수집 상담하고 해결 방안 등을 수립한다.
- 나. 회원의 후생 복지 및 권익 신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다. 회원의 가입 및 확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지부 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① 지부 총회는 지부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불신임 의결 시 의장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 총회는 정기 지부 총회와 임시 지부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지부 총회는 매년 1회로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시 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회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① 지부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지부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3. 감사의 선출
 - 4. 본회 총회에 상정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 5.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 중 임원의 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지부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지부 총회의 의결은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부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지회

제19조 (지회 설치) 지부장은 시·군·구에 본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지부를 통해 지회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지회장) 지회장은 지회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제21조 (지회 운영)

- ①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지회 설치 4년 이상의 경우, 지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2)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또는 대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회원

(3) 관련 사업 수행 중, 의도적인 사유로 인한 행정 처분 이상을 받지 않은 정회원

③ 지회장은 지부 총회 1주일 전에 지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서
-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서
- 3. 지회 회원 동정에 대한 사항
- 4. 지회 제반 규정은 지부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22조(재정) 제22조(재정) 지부 재정은 지부 회비와 중앙 지원금, 후원금, 수익 사업 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규정 개정) 지부운영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본회의 회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상벌) ① 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 회계 부정이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본회 이사회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면직, 배상, 총회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일 2018.03.05.

개정일 2022.05.04

개정일 2023. 04. 25

